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1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30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5. 11. 1~11. 30)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1.4	전 선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함
11.4	앰프, 스피커	내방	제품 및 코드에 붙이는 PL관련 주의, 경고 사항의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나?	국내 규정은 없음
11.4	꽃음플러그	전화	PL표시사항은 박스에 도 하나? 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중요한 경고문구만 박스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시사항이나 사용상 주의사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11.5	전기스토브	내방	스토브를 켜 놓고 소비자가 방을 비운 사이 옷가지에 붙어 붙어 손해배상 청구가 됨	과실상계 적용
11.10	램프안정기	내방	결함의 입증여부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판정은 후에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데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11.11	변압기	전화	사용자의 부주위, 오사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나?	과실상계 적용
11.18	전기매트	내방	지시, 경고문구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1. 사전상의(PL법 영문판) 2. 계약서 작성 3. L/C상에 명기
11.19	전기밥솥	내방	제품을 공급후 사용자가 개조를 하여 PL사고가 발생하면?	PL보상 책임이 없음